



## 국민건강보험공단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요양기관 본인확인 시 유의사항 안내 및 업무 협조 요청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제도 시행('24.5.20.) 이후 외국인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자에 대한 본인확인 미실시 내역이 확인되고 있어, 증도용 등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본인확인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- ◆ 신분증 제시 환자의 본인여부 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  
※ 본인확인여부(Y/N)는 전산 또는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보관(추후 이행여부 확인 시 증빙 자료로 활용)
- ◆ 특히,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에는 더욱 본인확인 철저
- ◆ 본인확인 미이행 시 과태료(100만원 이하)가 부과 될 수 있으며, 증도용 발견 시 본인확인 미확인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 연대고지 될 수 있음
- ◆ 여성폭력피해자 등 보호시설 입소자의 경우 의료급여증이나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로 본인확인하며, 별도의 추가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(붙임 참고)

3. 또한, 제도 관련 Q&A 등 관련 공지사항은 아래 경로를 통해 업데이트 되오니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◆ 요양기관 정보마당 > 공지사항
- ◆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> 국민과함께 > 뉴스/소식 > 공지사항

붙임 여성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진료 절차 안내 1부. 끝.

##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한 의사협회장, 대한치과 의사협회장, 대한간호사협회장,  
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

대리 이재희

팀장 이완근

부장 한세정

전결 11/11

협조자

시행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 (2024.11.11.) 접수 ( )  
진부(TF)-599

우 2646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77, 10층(반곡동, 건강보험공단 별관) / <http://www.nhis.or.kr>

전화 033-736-3387 전승 033-749-9618 / 191928@nhis.or.kr / 비공개(7)